

미니시리즈
노동법 극장

청소년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-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A군 이야기 -



“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기로 한 A군은
시급 조건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아 사장님께 문의했는데요.
청소년이니깐 좀 더 낮게 책정했다는 대답에 가우뚱 합니다.
청소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?”

내 시급이
최저임금보다 낮은거
같은데...?ㅠㅠ



청소년이라서
당연히 낮게 줘도
되는 줄 알았어





“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
적용을 받나요?”

YES

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, 비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,
청소년 근로자,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.

* 다만,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
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는 자는 제외



“5인 이상 사업장에만
적용되나요?”

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
에 적용됩니다.

*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 등 제외



“수습직원에게도
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?”

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(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제외)
**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하여
지급할 수 있습니다.**

* 단,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
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00% 지급해야 합니다.



“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
받기로 근로자와
협약할 수도 있지 않나요?”

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
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부분은 **무효**입니다.
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
지급하여야 합니다.



'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.

시급 9,160원

(월 환산액 1,914,440원*)

*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

○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○적용기간: '22.1.1.~ 22.12.31.

근로자의 소중한 한시간의 가치
최저임금으로 지켜주세요!



더 자세한 내용은?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

고용노동부 누리집 <http://www.moel.go.kr>